

종 법(宗法)

총무원법(總務院法)

제1장 총칙

제1조 종헌 제61조에 의하여 총무원과 종무원 각부의 조직 및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종무수행을 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무원소재지는 종헌종법의 규정 및 종령으로 정한다.

제3조 총무원 종무기관의 명칭은 원 부로 하고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국으로 한다.

제4조 총무원장은 위로 종정을 모시고 총무원 대표자로서 총무원 각부를 지휘하며 부원장은 총무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총무원장 및 부원장 각부 부장의 자격은 별표에 준한다.

제6조 1. 총무원장은 종무행정 전반을 통리하며 종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총무원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2. 총무원장은 종단의 중요 종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장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3. 중앙기관장 회의의 참석자는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장 각 전문위원장 각 전문기관의 원장 실장 등 형편에 따라서 부책임자도 참석할 수 있다.

제7조 총무원장은 다음 사항을 종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헌 종법 제정 개정에 대한 사항
2. 총무원 부장급 이상의 임면 사항
3. 전 종무기관의 임면 사항
4. 종단 중요사업 계획안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종단 중요회의와 행사 및 대외 행사에 관한 사항

제8조 총무원 부장 이하 직원은 총무원장 명에 의하여 본직 외의 직을 겸직할 수 있다.

제9조 총무원장 후보는 총무원장 선출일 30일 이전에 등록을 중앙총회에 접수하여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중앙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차점자가 부원장이 되며 종정이 임면한다.

제10조 중앙중회는 총무원장 선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고 중앙중회에서 다수결투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며 의장이 종정에게 보고한다.

단 중회의장이 중회결의로 결석사유가 있다고 인지할 시 적법 여부를 감찰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후보가 없거나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종정직권으로 원장 부원장을 임면한다.

제12조 총무원 회의는 총무원장이 주관하고 총무원장 유고시는 부원장이 주재한다.

제2장 총무회의

제13조 1. 총무원장 부원장은 각실 부장들로 총무회의를 구성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필요에 따라 부종정 및 중앙간부진을 포함하여 총무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중앙중회의원도 총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총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관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다.

4. 총무회의 결의는 총무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총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1. 중헌중법 및 중헌에 위배되는 사항

2. 중앙중회 및 기타 중앙기관에 부의할 사항

3. 재산처분 및 차입 담보 대출에 관한 사항

4. 총무행정 및 기본 계획과 각부의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5. 중요 총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제15조 원장직무대행

1. 총무원장 유고시 부원장이 대행하고 부원장도 유고시 기획실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종정의 별도 지시가 있을시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3장 각부 총무분담

제16조 총무원장은 각실 부서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7조 총무부장은 각부서에서 보고되는 사무사항을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제한다.

제18조 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회의원에 관한 사항
2. 종헌 중법 중령 등 제정 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4. 문서 수발 및 직인 보관에 대한 사항
5. 사찰 사무지도 감독과 사무인수 관계에 대한 사항
6. 제증명 발급에 대한 사항
7. 종단 각종 단체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총무원 각부의 업무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9. 종단 소송에 관한 사항
10.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제19조 교무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사항
2. 수련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4. 계단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요 및 의식에 관한 사항
6. 신도단체 교화단체의 조직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제20조 재무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단재정에 관한 사항
2. 종단재산관리에 대한 사항
3. 사업개발에 대한 사항
4. 경리 및 회계에 대한 사항
5. 비품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임대 및 채무 기체에 관한 사항

제21조 사회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2. 불교문화 예술관장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 및 자선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
4.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단체와 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본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한다.